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함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6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성함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성준,
김원태, 남창진, 민병주,
박수빈, 박승진, 박철성,
봉양순, 서상열, 송도호,
오금란, 유만희, 이병도,
이상훈, 이영실, 이종태,
이종환, 임규호, 임종국,
전병주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창경궁로를 비롯해 서울 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보행 중심 관광길 조성이 확산되고 있음.
- 그러나, 현행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에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 중심 관광길 조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, 역사문화 탐방로의 보행환경 정비, 안내체계 구축 등 역사문화 관광 보행사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실정임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,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,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-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공간 특성을 반영한 보행관광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,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보행관광을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심 내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, 보행 중심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7조의2 신설)

나.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, 보행 동선에 따른 안내체계, 휴게시설, 경관·공공디자인 등을 연계하고, 교통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를 포함함 (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역사문화보행관광 인프라 조성) ① 시장은 도심 내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,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행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

1. 역사문화자원과 연결된 보행환경의 개선 및 보행로 정비
2. 관광 안내시설, 쉼터, 표지판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완
3. 보행 동선을 고려한 거리 경관, 공공디자인 등 주변 공간의 정비
4. 보행 중심 관광구간의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역사문화보행관광 인프라 조성) ① 시장은 도심 내 역사·문화자원과 연계된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,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하며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보행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.</u> <u>1. 역사문화자원과 연결된 보행 환경의 개선 및 보행로 정비</u> <u>2. 관광 안내시설, 쉼터, 표지판 등 관광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완</u> <u>3. 보행 동선을 고려한 거리 경관, 공공디자인 등 주변 공간의 정비</u> <u>4. 보행 중심 관광구간의 운영과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</u> <u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른 교통</u>

약자가 불편 없이 관광활동을
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
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
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
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(역사문화보행관광 인프라 조성)에 따라 정책추진 비용 발생의 여지가 있어 서울관광재단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**기추진 사업**¹⁾으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

1) [기추진사업] 서울관광재단에서 도보해설관광 코스 및 장애인 도보해설관광을 하고 있고, 또한 각 관광지 별로 안내 표지판 및 벤치 등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추진사업으로 판단됨

① 도보해설관광 코스 : [궁궐] [왕릉] [한옥마을] [성곽둘레길] [도시재생] [건축&예술] [전통&문화] [순례길] 등 다채로운 테마로 경복궁, 북촌, 청계천, 남산성곽, 몽촌토성, 성균관 등의 40여 개 코스를 운영

② 장애인 도보해설관광 : 시각장애인을 위한 <덕수궁 코스>, 청각장애인을 위한 <덕수궁 코스>, <정동-경희궁 코스>, <서울로 1,2코스>,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한 <경복궁 무장애 코스>를 운영

※ 자료 : 서울관광재단 누리집